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책임세'

2010.1.20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목 차

1. 금융위기책임세란?
2.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효과
3. 금융위기책임세를 넘어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http://saesayon.org

1. 금융위기책임세란?

오늘은 '변화'를 기치로 내건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열렬한 지지자들의 기대와 달리 미국사회, 특히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월스트리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실업률은 10%까지 올랐고, 월스트리트 및 기득권 중심이 경제구조는 전혀 바꾸지 못하였다. 취약한 중소기업과 가계를 외면한 채, 대기업과 월가 편향의 구제금융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대외 정책에서는 '친절한 미국'의 이미지를 낳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프간 전쟁의 확대에서 보듯 부시의 대테러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국내 정책에서 가장 크게 우선순위를 두었던 의료개혁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공공보험'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타협의 산물이었다.

마치 지난 시기 노무현 정권처럼 좌와 우 모두로부터 비판 속에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좌로부터는 더욱 과감한 '개혁'을, 우로부터는 기득권의 강렬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은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지난 72년 이래 단 한 번도 공화당이 승리하지 못한 지역인데, 의료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으로 '슈퍼 60석'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1] 이러한 정치적 위기 속에, 지난 14일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하였다.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구제금융(TARP)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자, 즉 국민의 세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오바마는 지난 16일 라디오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금융위기책임세의 의의를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돌려받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미국인이 월가에 제공한 예외적 지원에 대해 완전히 보상받을 때까지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위기책임세를 제안하는 이유다.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막대한 보너스를 줄 만큼 자금 여력이 있다면, 그들은 확실히 납세자들이 지원한 모든 돈 또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의 추정에 따르면 구제금융에 따른 공적자금 손실이 3,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지표 및 금융시장 안정으로 1,17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세금 부과 대상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50개 대형 금융회사에게만 해당되며, 대부분의 지방 중소규모 은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큰 10대 대형 금융회사가 전체 세금의 60%를 납부하게 된다.

[표 1] '금융위기책임세'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목적	구제금융 손실분 보전	1,170억 달러
실행 계획	2010.6.30	의회 통과 이후
근거	긴급경제안정 법안(Emergency Economic Stability Act)	2008.10.3
세금징수 대상 기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	50여 개 금융회사
세금징수 대상 자산	총자산 - Tier1 자본금 - 예금	
세율	0.15%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총자산에서 보통주 등 핵심자본 및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고객예금을 제외하여 계산된다. 통상 총자산에서 자본금을 제외하면 '부채'로 간주하는데, 고객예금은 이미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안정적인 부채로 간주하여 세금 적용 대상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 1조 달러를 지닌 금융회사의 핵심자본이 1,000억(10%), 고객예금이 5,000억(50%) 달러라고 하면, 4,000억 달러에 대하여 0.15%의 세율을 부과하면 매년 6억 달러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월가의 대표선수인 골드만삭스의 2008년 재무제표에 적용하면, (8845.5-626.4-276.4)*0.0015=11.9억 달러로 추정된다.

아래의 표는 재무부의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것이다. 6대 금융회사들은 재무부로부터 1,600억 달러를 지원 받았지만, 작년 막대한 순이익을 통해 시티그룹을 제외하고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표 2] 주요 금융회사별 연간 금융위기책임세 부담액 추정

구분	JP 모건	시티그룹	Bank of America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월스트리트저널 추정	24.6	24.3	23.6	12.1	10.4	10.1
Concept Capital 추정	19.56	21.6	17.37	11.7	9.92	5.78
구제금융 지원	250	450	450	100	100	250
상환액	250	200	450	100	100	250

2.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효과

2008년 10월 통과된 '긴급경제안정화 법안(EESA)'에 따라 구제금융(TARP) 프로그램이 집행되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EESA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이 정부적자나 국가부채를 추가하지 않도록, 부족한 금액만큼 금융 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법률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배경보다 더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정치적 고려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회사, 특히 5대 투자은행이다. 이들이 초래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실업률은 10%로 치솟고 가계의 자산은 GDP를 훨씬 초과하여 훼손되었다. 그러나 월가는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막대한 지원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이윤을 창출하였다. 실제 위기의 주범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지만, 위기의 유탄을 맞은 대중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위기에 노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책임과 부담, 위험과 보상의 불균형을 나타낸 분명한 '시장실패'다.

[그림 1] 월가 보너스 부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을 기초로 월가는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2008년보다 40% 이상 증가하여 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컨설턴트 Johnson Associates의 연례보고서가 발표되었다.[2] 특히 연초 실적발표 및 보너스 시즌을 맞이하여 월가의 대대적인 보너스 지급 계획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락하는 지지율의 반등을 노리는 정치인은 대중의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인센티브를 지니게 된다. 특히 취임 1주년과 '슈퍼 60석'을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당에서 연일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고, '세금'이라면 펄펄 뛰는 공화당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평소답지 않게 조용한 것도 대중의 정서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바마 및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구제금융 및 재정지출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와도 관련되어 있다. 월가에 세금 부과를 통해 금융위기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부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의지를 대중에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고려는 '금융위기책임부담금'라는 어휘 자체에도 나타나 있다.[3] 즉 통상적인 tax로 표현하지 않고 fee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탄소세(Carbon tax)가 아니라, 탄소공제(Carbon offset)라 부르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 '공제'라는 어휘에는 자연적 혹은 정상적인 균형으로 회복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세금'이라는 단어는 보수언론의 집요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마치 정부가 정당한 수익을 '빼어가는' 의미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과징금(또는 수수료; fee)은 벌금(fine)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징벌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대중의 정서에 조응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고려보다 더욱 시사점을 주는 것은 세금 부과를 통한 정책적 기대효과다. 재무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금과 자본금을 제외한 자산, 즉 '부채'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레버리지 억제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0.15%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자산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상업은행의 주요 부채인 고객예금을 제외하므로 투자은행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리스크와 레버리지로 금융위기의 주범에 차별적 부담을 주는 의의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므로, 지방의 중소은행은 적용되지 않는 이점을 지닌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월가와 지방 중소은행을 분리하여 법안의 의회 통과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와 직접 접촉을 해야 하는 의원들은 지방 중소은행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부과 대상을 차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득은 기득권의 '세금 전가' 논리 또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탄'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전쟁과 폭력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서인지 매우 호전적인 집단임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 조성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는 소비자에게 가격, 예를 들어 대출금리를 올려 세금을 전가한다는 위협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세금은 '나쁜 것'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금융회사가 금리를 올려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자산규모 5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은행이나 금리를 올리지 않는 다른 대형은행에 고객을 뺏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금융 산업의 경쟁을 자극하고 시장점유율의 쏠림 현상, 즉 독과점 구조를 저해할 수 있는 기능도 지닌다.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없다면, 가격을 통한 세금전가는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긍정적인 요인은 이른바 '대마불사'의 논리로 국내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들의 악행을 어느 정도 억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월가의 금융회사 하나가 파산하면, 국내경제 전체가 초토화되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위기에 따른 구제금융의 관행은, '구제금융이냐 경제위기냐'의 양자택일의 선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합병에 따라 규모는 더욱 커지고, 파산에 따른 경제 전체의 손실은 더욱 커짐에 따라 '대마불사'의 논리는 한층 강렬해지고 있다.

그러나 구제금융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앞으로 실물경제를 위협하며 위험감수, 단기수익, 레버리지 등 월가의 관행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책임세 부과는 최근 국제적인 금융거래세 논의와도 관련되어 있다. 금융거래세(이른바 토빈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지난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영국의 고든브라운 총리는 '금융거래세'를 논의하려 했지만, 가이스너는 미국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12월, 27개 유럽연합은 글로벌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는 결의를 발표하였다. 또한 영국은 지난 해 이미 금융회사의 보너스가 1인당 2만5천파운드(약 4천700만원)를 초과할 경우 50% 세금을 물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프랑스 또한 3월말에 27,500유로(4만 달러)를 초과하면 역시 50% 세금을 일회성으로 부과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미국 정치권에서도 월가의 보너스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지만, 행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주주가 보너스를 결정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월가의 보너스 관행이 무리한 위험감수와 단기수익추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금융개혁 법안에도 보너스 제한에 대한 조항은 빠져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4]에 따르면, 월가에 대한 세금 부과는 지난 8월, 재무부장관 가이스너의 지시에 따라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네 가지 옵션이 거론되었는데, 나머지 셋은 금융거래세, 이윤세, 이자지불에 대한 세금공제 폐지였다. 월가에 대한 대중의 분노, 세금 징수의 효율성, 그리고 행정부의 금융개혁 기조(레버리지 제한)와 조응하는 방안,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거래세 부과 움직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

위기책임세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3. 금융위기책임세를 넘어서

금융위기책임세는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기를 초래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2011년 예산안을 통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지만 실제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 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월가의 최대 로비단체인 증권산업금융시장연합(SIFMA)은 대법원 전문 변호사인 카터 G 필립스를 고용하여 '위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5] 기득권의 저항은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다. 기득권은 유전적으로 '헌법'을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어느 곳이나 개혁은 이익단체의 저항과 '위헌'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는 상식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개혁의지가 없다면 정치적 혼란 속에 기득권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 속에서 적절한 타협으로 끝나고 말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책임세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논란도 향후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개혁이다. 거시경제의 Boom-Bust 동학에 따라 위기는 월가가 초래하고, 정부는 뒷수습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른바 위기-구제의 동학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리먼 파산이 세계경제를 강타함에 따라, 특정 금융회사의 파산은 시스템위기로 빠짐을 더욱 더 확인하게 되었다. 이른바 '대마불사'의 학습효과, 또는 대형금융회사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Implicit insurance)'을 확신함에 따라 고위험을 선택할 유인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버블이 발생하면 월가가 승리하고, 버블이 터지면 월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잃게 되는 게임이다. 월가는 어느 것을 택해도 잃는 것이 없는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암묵적 보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시장참여자가 학습하고 확신하게 되면, 월가의 시장 지배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위기가 끝나는 순간부터 새롭고 더 강력한 위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대마불사' 협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많은 문제점과 대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크게 다음 네 가지 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규모에 대한 제한**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분리하는 것이다. 즉 규모 자체만으로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미국에 8,100여 개 은행이 있는데,

Top4 은행(Citi, BOA, JP Morgan, Wells Fargo)이 전체 자산의 37.9%, 예금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돈이 되는 곳에 항상 독과점이 존재한다.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유럽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핵심 모기업을 강화하고 소규모 자회사를 매각하는 방안들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한 기업의 운영자산에 특정 한도를 두어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설파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스티글리츠 교수나 그린스펀 등이다.

둘째, **사업영역에 대한 제한**으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자는 제안이다. 예를 들어, 작년 5월 민주당 Maurice Hinchey 의원 주도로 'Glass-Steagall 법안 수정안'이 발의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상원의원 McCain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에 특정 자회사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법안(Banking Integrity Act of 2009)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는 좌파 경제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현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자 전 연준 의장인 Volker의 지지 또한 받고 있다. 상업은행이 설립 목적에 맞게 대중에 복무하는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예금과 대출 등 전통적인 금융중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중개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므로, 위기에 빠질 때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구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상업은행이 위험한 투자활동에 치중하면 '이해관계의 충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투자은행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들의 위기는 구제가 아니라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무부의 금융개혁 청사진, 하원과 상원의 법률 논의 등은 모두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12월, 하원에서 '월스트리트 개혁과 소비자 보호 법안'이 통과되었다. 재무부의 금융개혁 청사진을 토대로 기존의 금융감독기관들의 연합체인 '금융서비스 감독위원회'를 새로 설립하여 시스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개혁의 요지다. 또한 상원에서는 11월, 영국의 금융안정청과 유사한 독립적인 '금융규제청(FIRA)'을 설립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협상 중이다.

마지막, '대마불사' 기업에 대한 **보험료와 세금 강화**다. '대마불사' 기업들은 구제에 따른 잠재적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구제금융 자체가 일종의 보조금 성격을 지니므로 세금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Barney Frank는 '금융안정성 강화 법안'을 제출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와 유사한 '보험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또 다른 옵션은 최근 회자되고 있는 '토빈세' 논의다. 토빈세는 원래 국제외환거래의 투기적 성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창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모든 파생거래를 포괄하는 '금융거래세'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주로 좌파 경제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총리는 이례적으로 지난 해 12월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글로벌 금융, 글로벌 규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공동기고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은행과 사회 간의 새로운 국제 협약이 시급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국제 협약을 제안하다고 밝혔다.
즉 은행 시스템의 위험과 보상 간 불균형 제약, 경제적 호황기에 발생하는 편익의 불균형 시정, 국제적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국제적 협약을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실행 조치로서 글로벌 금융거래와 과도한 은행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유럽의 의미 있는 제안에 대해, 가이스너 재무장관은 '도덕적 해이'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표 3] 연방정부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2009, 11.30일 기준)

자료: Congressional Oversight Panel(2010/1/13)

구분	재무부	중앙은행 (FRB)	예금보험공사 (FDIC)	합계
합계	6,987	15,099	6,784	28,870
AIG	698	687	0	1,385
BOA	450	0	0	450(상환)
Citi	450	0	0	450(200 상환)
CPP	711	0	0	711
TALF	200	1,800	0	2,000
PPIF	300	0	0	300
주택대출 조건 조정	500	0	0	500
자동차산업 지원	817	0	0	817
중소기업 대출 지원	150	0	0	150
긴급 유동성보장	0	0	6090	6090
예금보험펀드	0	0	694	694
신용 확대	0	12,612	0	12,612

[표 4] 재무부 구제금융(TARP) 회계(2009, 12.30일 기준)

구분	지원 계획	실제 집행	상환	지원 잔액
은행 자본 확충(CPP)	2,180	2,049	1,219	830
Citi, BOA 긴급유동성 지원	400	400	400	0
AIG 긴급유동성 지원	698	469	0	469
자동차산업 지원	813	813	32	781
Citi 부실자산 보증	50	50	50	0
ABS 시장 유동성공급(TALF)	200	200	0	200
민관투자펀드(PPIF)	300	300	0	300
주택대출 조건 조정	500	355	0	355
자동차산업 지원	817	0	0	817
중소기업 대출 지원	150	0	0	0
합계	6,987	4,671	1,701	2,970

[표 5] 연방정부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2009, 11.30일 기준)

자료: Congressional Oversight Panel(2010/1/13)

구분	재무부	중앙은행 (FRB)	예금보험공사 (FDIC)	합계
합계	6,987	15,099	6,784	28,870
AIG	698	687	0	1,385
BOA	450	0	0	450(상환)
Citi	450	0	0	450(200 상환)
CPP	711	0	0	711
TALF	200	1,800	0	2,000
PPIF	300	0	0	300
주택대출 조건 조정	500	0	0	500
자동차산업 지원	817	0	0	817
중소기업 대출 지원	150	0	0	150
긴급 유동성보장	0	0	6090	6090
예금보험펀드	0	0	694	694
신용 확대	0	12,612	0	12,612

하지만 금융거래세는 투기거래 방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의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엔 및 G-20 등 국제적 논의 테이블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외환위기, 신용카드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는 우리사회에도 항상 동일한 원리와 결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의 주범은 재벌과 금융회사임에도 정부와 중앙은행의 구제금융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거나 주인만 바꾼 채 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과 서민

들은 파산, 신용불량 그리고 실업의 굴레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무언가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임에도 경로의존성에 따라 관행이 되어 버렸다. 이번 기회에 구제금융 또는 공적자금의 집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형평성이라는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사연 saesayon.org

---

1) 오늘 열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여 민주당은 '슈퍼 60석'을 잃게 되었다.
2) 뉴욕타임즈(09/11/5), Some Wall Street Year-End Bonuses Could Hit Pre-Downturn Highs.
3) 뉴욕타임즈(2010/1/14), A Tax by Any Other Name.
4) 뉴욕타임즈(2009/1/14), The Story Behind the Obama Bank Tax.
5) 뉴욕타임즈(2009/1/18), Wall St. Weighs a Challenge to a Proposed Tax.